

# 위기의 '섬유' FTA 파고 넘어 세계로 비상

## 1. 배경

- 중국 등 후발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지역 섬유업계가 최대 위기를 맞이했지만 EU, 미국, 터키 등 섬유 수출국과 FTA가 체결되어 FTA 활용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부상
    - 과거에는 유행을 잘 활용하거나 염색기술 등 품질로 중국과 경쟁력이 있었지만, 후발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원가 무한 경쟁시대 돌입
    - FTA 활용을 위해 타 품목에 비해 까다로운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함
- \* 한-미 FTA : yarn forward rule(원사규정)

## 2. 장애 요소

- 어렵고 복잡한 섬유류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
  - 원재료의 혼용률에 따라 품목분류 상이, 품목별 관세철폐 스케줄 상이
- 한-미 FTA의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으로 FTA 활용 미리 포기
  - 섬유제품의 경우 원사기준(yarn-forward rule)을 적용함에 따라 역내산 '실'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·편직하고, 역내에서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·봉제해야만 원산지 인정
- 섬유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영세업체로 FTA 활용 및 특혜대상 신제품 개발 여력 절대적 부족

## 3. 극복 방안

- 섬유업계 FTA 활용 지원을 위한 민-관 업무협약(MOU) 체결(대구세관-한국섬유개발연구원)

- 섬유업체 대상 FTA 실무교육 및 컨설팅 상시지원체제 가동
- 주요 섬유제품에 대한 미국 품목분류 'HS 해설서' 발간
- 대구세관-경상북도-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합동 섬유 생산기술 활용 FTA 지원사업 실시(경상북도 등 예산 2억 유치)
  - FTA 체약국별 양허조건 분석, 관세 즉시철폐 및 기간단축 품목 발굴
  - 생산기술과 FTA 전문지식을 접목하여 관세혜택 품목 신제품 연구·개발

## 4. 활용 효과

### 1) 원사 혼용률 조정을 통한 특혜대상 품목 개발로 미국시장진출(Y사)

구분	수출물품	HS	한-미 FTA 관세철폐스케줄	특징
FTA 활용 전 (기존생산물)	합성필라멘트 직물 (*장섬유)	5407.52 〈원재료〉 ① 합성필라멘트사(100%)	10년 단계적 철폐 (*14년 10.4%)	- 원재료 상대적으로 저렴
FTA 활용 후 (신제품 개발)	합성스테이플 섬유 직물 (*단섬유)	5512.19 〈원재료〉 ① 합성스테이플섬유사(85%) ② 합성필라멘트사(15%)	즉시철폐 (0%)	- 관세 즉시철폐 대상(원가상승분 상쇄) - 품질 우수

- Y사의 주요 생산품인 합성필라멘트 직물(HS 제5407.52호)은 한-미 FTA 관세 즉시 철폐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, 중국 등 경쟁국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 열세 → **미국시장 진출 애로**  
\* HS 제5407.52호 : 관세 철폐 스케줄(10년, '14년 10.4%)
- 직물의 원재료인 원사의 혼용률을 변환시켜 한-미 FTA 관세 즉시 철폐 품목에 해당하는 신제품 개발(**HS 제5512.19호**)
- 합성스테이플섬유사는 합성필라멘트사보다 원가가 조금 높지만, 수출제품(직물)이 FTA 관세 즉시 철폐 품목이 됨으로써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상쇄시켰으며, 합성필라멘트직물보다 품질이 고급화되어 미국 시장 공략 성공
- ▶ 미국 M사와 년 12만 yards(48만볼) 계약 성사 등 향후 10년간 500만볼 이상 對미 수출 파급 효과 창출

## 2) 한-미 FTA 예외원사를 사용하여 ‘yarn-forward rule’ 극복(T사)

구분	수출물품	HS	한-미 FTA 관세철폐스케줄	특징
FTA 활용 전 (기존생산품)	합성필라멘트 편직물	6006.32 〈원재료〉 ① 합성 필라멘트사 (원산지 : KR)	10년 단계적 철폐 ('14년 7%)	- 원재료 상대적으로 저렴
FTA 활용 후 (신제품 개발)	(합성필라멘트) 비스코스레이온 편직물	6006.42 〈원재료〉 ① 비스코스레이온사* (원산지 : CN)	즉시철폐 (0%)	- 관세 즉시철폐 대상 - 인체친화형 고품질니트

### \* 비스코스레이온사(HS 제5403.31호, HS 제5403.32호)

‘비스코스레이온사’는 펄프(나무)로부터 생산되는 천연원사로 촉감이 견과 아주 흡사하여 인간이 만든 비단(인견)으로 불리며, 천연섬유에 가까워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고 땀흡수 및 통풍성이 뛰어나.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가공에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원사

- 한-미 FTA 섬유품목은 ‘yarn-forward rule’이 일반적이어서 FTA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산 원사를 사용해야 하며, 한국산 원사를 사용하더라도 수출물품의 한-미 FTA 관세철폐 스케줄이 10년이므로 관세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고품질 품목 개발 시급
- ‘비스코스레이온사’는 한-미 FTA ‘yarn-forward rule’ 제외품목인 것을 확인(비원산지 원사 사용 가능), 역외산을 수입하여 편직물품 생산
  - \* 단, 합성필라멘트 비스코스레이온사만 가능하고 합성스테이플 비스코스레이온사 (HS 제5510호)는 ‘yarn-forward rule’ 적용
- 또한, ‘비스코스레이온사’로 편직된 ‘HS 제6006.42호’ 품목은 한-미 FTA 관세 즉시 철폐 품목
- ▶ 한-미 FTA 맞춤형 신제품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FTA 활용으로 미국시장 진출 성공 및 향후 10년간 300만불 이상 수출 예상

### 3) 전략적 신제품 개발로 특정시장(터키, 미국) 공략(D사)

구분	수출물품	HS	한-터키 수출	한-미 FTA
FTA 활용 전 (기존생산물)	FABRICS (PET직물)	5407.69	반덤핑관세 부과 (최고 40%)	관세철폐스케줄 : 10년('14년 10.4%)
		〈원재료〉 ① Poly(96%) ② Span(4%)		
FTA 활용 후 (신제품 개발)	FABRICS (PET/Modal* 교직물)	5516.22	반덤핑관세 없음	관세철폐스케줄 : 즉시철폐(0%)
		〈원재료〉 ① Poly(49%) ② Modal(51%)*		

\* '모달'이란 재생섬유의 하나로, 만드는 방법과 기능은 비스코스 레이온과 거의 같으며, 너도밤나무에서 추출한 천연섬유로 21세기 품의 섬유로 일컬어짐

- 주요 생산품인 합성필라멘트 직물(HS 제5407.69호)은 터키 수출시 최고 40% 반덤핑관세 부과됨

- 한-미 FTA에서는 관세 즉시 철폐품목에서 제외

\* HS 제5407.69호 : 관세 철폐 스케줄(10년, '14년 10.4%)

#### ▶ 터키 및 미국 시장 진출 애로

- 직물의 원재료인 원사의 혼용률을 변환시켜 한-터키 및 한-미 FTA 동시 활용 가능 신제품 개발(HS 제5516.22호)
- 신제품인 Poly/Modal 교직물은 Modal사를 사용하여 Poly 직물보다 원가가 조금 높아졌지만, 한-미 FTA 즉시 관세철폐 및 한-터키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 대상이 됨으로써 원가 상승분을 상쇄시키고, 기존 직물보다 품질이 향상되어 터키 및 미국시장 공략

#### ▶ 반덤핑관세 회피 및 즉시 특혜관세 혜택으로 향후 200만불 수출 효과

## 5. 시사점

- FTA 교육 및 컨설팅 등 일반적인 FTA 활용지원이 아닌,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품목분류 및 기술개발·연구 등 실질적인 지원
- 체약국별 양허 조건 분석, 관세 즉시철폐 품목 발굴 및 투입된 원사의 혼용률 조정 등 생산기술과 접목한 적극적인 FTA 활용

- 
- 수출시장에서 대표적인 사양 산업으로 꼽혔던 섬유산업을 유관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하여 재도약의 발판 마련
    - 15개 업체 FTA 활용 신제품 개발, 매출증가 100억원(평균 9.1% 신장), 고용창출 30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
    - 지역의 근간산업인 섬유업계에 FTA 활용에 대한 자신감 고취
  - 협정별/품목별 철저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관세철폐 스케줄 분석을 통한 고품질의 한국산 신제품 개발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향상
  - FTA 활용으로 8~32%의 관세가 즉시,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중국산과의 가격 차이를 거의 상쇄하며, 유사 제품일 경우 바이어 입장에서는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고 납기를 준수하는 한국산 선호
  - FTA 활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·영세업체를 위해 민-관-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주요 산업의 실질적인 FTA 활용을 지원한 사례